

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2가단14866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파산관재인 C

피고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

변론 종결2024. 10. 16.

판결 선고2024.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39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 1) B은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2) B은 2022. 11. 7.경 피고에게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99,124,136원 및 12,271,154원 상당의 각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22. 11. 10. 위 병원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채권양도'라 하고, 양도대상 채권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 3) 피고는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변제로 2022. 11. 30. 25,261,787원, 2022. 12. 20. 34,455,158원(= 29,522,638원 + 4,932,520원), 2023. 1. 20. 51,678,345원(= 44,339,711원 + 7,338,634원) 합계 111,395,29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소송의 경과

- 1) B의 채권자인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는 2022. 11. 23. 피고를 상대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부산지방법원은 2023. 9. 25. B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날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2019하단293호).
- 3) 원고는 2023. 11. 13.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한 후 2024. 7. 16.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 정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채권액 상당의 가액배상으로 111,395,290원(= 99,124,136원 + 12,271,154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 1) 부인 대상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46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일반재산 유지·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경우와는 달리, 이른바 편파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파산법상의 부인권 제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당 행위 당시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볼 필요도 없고, 행위 당시 자산초과상태였다 하여도 장차 파산절차에서 배당재원이 공익채권과 파산채권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이상, 그리고 그러한 개연성이 존재하는 이상,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한다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이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아야 할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부인권 행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8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에 대하여 채권이 있었고 그에 대한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변제로서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B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변제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따라 그 효력이 부인된다.

① F는 B에게 533,668,596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의 변제를 독촉하는 A의 2022. 11. 1.자 내용증명 우편이 2022. 11.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은 그 직후인 2022. 11.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② B이 운영하던 E의 매출이 2022년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였고,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은 2022. 12. 27. 폐업신고를 한데 이어 2023. 3. 6. 파산 신청을 하였다.

③ 위 파산 신청 시 B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A에 대하여 533,668,59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에 대하여 210,000,000원, H 주식회사에 대하여 64,768,527원, I 주식회사에 대하여 67,472,499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212,731,734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채권양도 당시 B이 부담하던 채무의 규모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각 채권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인 J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담보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B이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후 K에게 양도한 E 사업 영위 과정에서 취득한 L(사업자명 M)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채권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채권액을 포함한 전체 물품대금 채권액은 앞서 본 채무액에 상당 정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관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로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B에 대한 채권 내역 및 그 발생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금융거래 내역 등 그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② 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양도 이후인 2022. 11. 10.에야 비로소 피고가 B에 대하여 34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③ 위 공정증서의 내용을 보면 변제기가 2022. 12. 31.로 되어 있어 이에 의하면 B은 아직 변제기도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민법상 사해행위취소권과 달리 채무자회생법은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가액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부인권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5027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액인 111,395,29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이 사건 각 채권양도에 따른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받은 111,39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어 부인권 행사 효력이 발생한 다음 날인 2024.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허이훈